

파주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3년 6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3년 6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파주시의 재정투·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 등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재정비하고, 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투자심사대상을 “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”에서 “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10억원 이상 사업비 전액을 시비(지방채를 제외한다)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”으로 조정함. (안 제2조제1항)

-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“9인 이내”에서 “15인 이내”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함. (안 제4조제2항, 제3항)
- 투자심사 시기를 “당해사업의 실시설계용역전”에서 “당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전”으로 세부 규정함. (안 제5조제1항)
- 제심사 규정 추가. (안 제7조)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 재정투·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재정비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, 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규칙, 지방재정투·융자사업 심사지침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”을 “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”으로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,

- 30억원 이상 대단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형식적이고 부실한 투자심사를 방지하고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.

※ 도 제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은 30억원이상 200억원까지
이며 2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제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

- 안 제4조제2항에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“9인 이내”에서 “15인 이내”로 위원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도로교통, 문화·체육·청소년, 청소·환경·상하수, 주택·농수산, 지역개발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구성하여 투자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.
- 그러나,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구성 시에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 위촉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안 제5조제1항에서는 투자심사 시기를 “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”에서 “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전”으로 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심사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음.
- 이는 실시설계용역전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반된 사업에 대하여 투·융자심사를 함으로서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한 조치로 보임.
-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심사결과를 동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의뢰자에 통보하도록 통보기한을 새로 명시함으로서 각종 재원지원은 물론 사업추진과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사료됨.
- 이상과 같이, 동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재정투·융자사업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심사대상과 기준을 조정하고,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심사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